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행심2020-9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고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3.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학교에서의 봉사 1일 2시간씩 5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0.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인 ●●●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2020. 1. 7.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출석정지 5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 1. 12.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절차적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이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담자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임의 수정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매우 낮은 전문성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판단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 1) 청구인은 ●●●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 및 △△△△ 고등학교 1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 사건 행위를 쌍방폭행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경위와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사실이 심각한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 등 관련자의 의견진술, 목격자 학생들 진술 등을 보면, 이 사건 ●●●이 먼저 싸우자고는 말했으나, 그 이후 청구인도 대화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싸우자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청구인이 먼저 교실로 찾아가 지금 빨리 싸우자고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도 청구인으로부터 맞았고, 서로 옷도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행위도 학교 폭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점수 산정의 문제가 없고, 이 사건 조치가 청구인의 선도 교육적인 목적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며, 그 조치의 경중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2. 17. 경 하교무렵에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인 A학생과 B학생을 □□고등학교 정문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 등이 청구인의 친구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가 되어 서로 언쟁이 있었지만, 청구인이 사과하여 잘 마무리가 되었다.

나. 이후 △△△△고등학교 C학생 학생이 ●●●, ○○○, 청구인 등이 포함된 단체 페이스북방을 만들었고, 대화 도중에 ●●●은 청구인에게 계속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싸지 박자” 라고 하면서 싸움을 청하자, 청구인도 “싸지 박는 것 좋지” 라고 싸움을 승낙 하였다.

다. 청구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한 다음날,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에게 너 말대로 싸울 거면 지금 싸우자고 말하였으나, ●●●은 학교에서는 못 싸운다고 하여 싸움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라. 당일 오전 11시 경 청구인은 ●●●으로부터 △△△△고등학교 D학생을 통하여 다시 싸우자는 제의를 받았고, 학교 하교 후에 ●●●과 함께 △△△△고등학교 앞의 굴포천 다리 부근의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청구인은 ●●●과 싸움을 하였다.

3. 판 단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이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담자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임의 수정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치위원들의 매우 낮은 전문성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판단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범위는 청구인이 ●●●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국한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편파적 조사에 대한 절차적 위법여부를 이 사건 판단에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에 대하여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임의 수정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낮은 전문성이 있다거나 위 회의를 진행 및 의결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위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2) 청구인은 ●●●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 및 △△△ △고등학교 1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

술을 받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없이 이 사건 행위를 쌍방 폭행으로 인정하여 가해학생으로 인정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 12. 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페이스북북방에서 싸움을 하자는 제의에 이에 승낙한 사실과 청구인이 다음날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에게 가서 싸움을 하자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술과 현장에 있던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이 △△△△고등학교 앞 굴포천 부근 다리에서 서로 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재량권일탈, 남용여부)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제2호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에 대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인정이 되는 만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의 처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과 싸움을 하게 된 경위가 ●●●이 페이스북 채팅방에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초대 한 후에 사과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에게 싸움을 하자고 제의를 하여 청구인이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점, 청구인이 다음날 1교시 이후에 비록 ●●●에게 싸우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의 거절로 인하여 더이상 학교에서 싸움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은 친구인 △△△△고등학교 D학생을 통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싸우자고 함으로 ●●●이 다시 청구인에게 싸움을 유발한 점,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굴포천 다리 부근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굴포천 다리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청구인은 당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과 싸움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싸움의 상황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고, ●●●으로부터 청구인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에 대한 학교폭력이 심각하거나 지속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

인의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크며, 청구인에게 선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만큼, 피청구인의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것에 비추어 『학교에서의 봉사 1일 2시간씩 5일』에 해당하는 처분이 적정하다고 볼 것이다.

라.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